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3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서영교·박희승·임오경

박지원 • 이훈기 • 윤준병

위성곤 · 임호선 · 이해식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.

이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 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(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2 월 31일"을 각각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의2(도심 공공주택 복합사	제74조의2(도심 공공주택 복합사
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공공	업 등에 대한 감면) ①
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마목	
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	
업(이하 이 조에서 "복합사업"	
이라 한다) 및 「도시재생 활	
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	
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	
혁신지구재생사업(「도시재생	
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	
법」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	
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	
하는 사업에 한정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"주거혁신지구재생사	
업"이라 한다)의 시행으로 해	
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	
의 소유자(상속인을 포함한다.	
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「공	
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10제	
3항 및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	
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5조	
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(이	
하 이 조에서 "현물보상"이라	

한다)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 (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

② (생 략)

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 재생사업(이하 이 항에서 "복합사업등"이라 한다)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

<u>2027년 12</u>
월 31일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2027년 12월 31일</u>

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	
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	
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	
취득세를 추징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